

「계좌통합관리서비스」이용약관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9.05.03

2.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제 1 조(목적) (생략)</p> 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</p> <p>1~2.(생략)</p> <p>3. "비활동성계좌"라 함은 최종입출금일(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)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 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.</p> <p>다만, 한도대출약정계좌(마이너스통장), <u>세금우대계좌</u>, 청약관련계좌,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(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)로부터 조회일 까지의 기간이 1 년을 초과하였다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.</p> <p>4~9.(생략)</p> <p>10.(<u>신설</u>)</p> <p>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<u>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</p>	<p>제 1 조(목적) (좌동)</p> 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</p> <p>1~2.(좌동)</p> <p>3. "비활동성계좌"라 함은 최종입출금일(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)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 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.</p> <p>다만, 한도대출약정계좌(마이너스통장), <u>세금우대계좌(구.개인 연금저축계좌 제외)</u>, 청약관련계좌,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(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)로부터 조회일 까지의 기간이 1 년을 초과하였다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.</p> <p>4~9.(좌동)</p> <p>10."<u>구.개인연금저축</u>"이라 함은 <u>구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(2013.1.1 삭제)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 년 12 월 31 일에 판매종료된 상품입니다.</u></p> <p>② 이 약관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<u>전자금융거래법,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, 전자금융감독규정,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</p>	<p>구.개인연금저축 계좌의 비활동성 계좌제한 해제</p> <p>구.개인연금저축 정의 명시</p> <p>관련법령 구체적 기술</p>

제 3 조(이용대상) ~ 제 11 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 (생략)

제 3 조(이용대상) ~ 제 11 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 (좌동)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미적용